제 120 호

행 정 명 령(E X E C U T I V E  O R D E R)

**통근 열차, 버스 및 페리에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뉴저지 및 코네티컷 경찰관을 철도 경찰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비상 선언**

수 천명의 통근자들이 대중이 이용 가능한 주간 철도, 버스 및 페리 시스템을 포함한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뉴욕주와 뉴저지주, 코네티컷주 사이를 통근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교통수단에 대한 향상된 법률 집행이 필요합니다.

2005 년 런던과 2004 년 마드리드에서 발생한 폭발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테러리스트들은 폭발성 장치 및 기타 장치를 사용하여 대중교통 및 민간교통 수단을 공격했으며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는 확인된 위협이 없지만, 뉴욕주, 뉴저지주 및 코네티컷주 사이의 대중교통 체계는 특히 위험도가 높은 목표물이 되고 있습니다.

2012 년 11 월 뉴욕에 대한 공격의 실행 및 시도로 인한 라에스 알람 카지의 체포; 2006 년 PATH 철도 시스템에 대한 아셈 하모우드의 음모;  2009 년 나지불라 자지에 의한 뉴욕시 지하철에 대한 음모; 2010 년 5 월 파이잘 샤자드와 그의 공모자에 의한 뉴욕시 지하철에 대한 음모; 2012 년 10 월 쿠아지 모하마드 레즈와눌 아산이 Lower Manhattan 소재 뉴욕연방준비은행 바깥에서  1,000 파운드의 자동차 폭탄을 폭발시키려던 시도의 실패; 2011 년 5 월 뉴욕시 시나고그를 폭파하려던 음모로 아메드 페르하니와 모하메드 맘도우의 체포, 그 당시, 페르하니와 맘도우는 교회 및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포함하여 뉴욕시의 추가 목표물을 토의등을 포함한 완료 및 시도된 뉴욕 공격은 테러리스트들이 뉴욕주에 꾸준한 위협을 계속 제기함을 나타냅니다.

2009 년 크리스마스날 디트로이트행 항공기 폭파 음모; 2010 년 11 월 자생적 폭력 극단주의자에 의한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의 명절 트리 점등식 폭파 음모; 2010 년 12 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자살 폭파자에 의한 크리스마스 쇼핑객으로 가득찬 시장 공격; 2010 년 12 월 영국에서 휴가 시즌 동안 공격 수행을 음모한 12 명의 체포에서 알 수 있듯이 테러리스트들은 일반적으로 미국에 대량 사상자를 내고 경제적 및 심리적 피해를 극대화할 목적으로 공격을 계획할 때는 중요한 상징적 날짜를 고려하기 때문에 새해 전날과 새해를 포함하여 휴가 시즌은 테러리스트 공격의 경보 및 위험이 고조되는 시기입니다.

뉴욕주의 자매주들인 코네티컷주와 뉴저지주는 뉴욕주를 왕래하는 통근 열차, 버스 및 페리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각 주의 경찰관을 배치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코네티컷주 경찰, 코네티컷주 카운티 또는 시의 경찰, 뉴저지주 경찰, 뉴저지주 카운티 또는 시의 경찰 중에서 맹세를 한 사람들은 코네티컷주와 뉴욕주 또는 뉴저지주와 뉴욕주 사이의 관할 경계를 넘을 경우 해당 법률 집행 기관의 관할권 이내로 제한됩니다.

뉴욕, 뉴저지 및 코네티컷은 모두 자매 주들 사이에 상호 지원과 자원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비상 관리 지원 협약(Emergency Management Assistance Compact: EMAC)의 구성원입니다.

EMAC 는 이 협약에 따라 비상 인력을 제공 받는 주의 관할 경계 내에서 활동하는 파견된 비상 인력은 비상 서비스 제공 임무를 수행하는 주에서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권능(파견된 주가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한 체포는 제외), 임무, 권리 및 특권을 가지도록 합니다.

자매주에서 제공한 경찰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우리는 이들이 뉴욕주 관할지역에서 활동하는 동안 체포 권한을 포함한 경찰관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철도법 제88조에 의거 뉴욕주 경찰국장은 지정된 상황에서만 특정 제한사항에 따라 철도 경찰관을 지명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한 경우 및 제한 사항이 2013년 12월 31일 ~ 2014년 1월 1일에 철도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자매주 출신 선서 경찰관에 적용되는 경우, 그러한 적용은 테러리스트의 공격 또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방해, 저지 및 지연시킬 것입니다.

행정법 제29-a조는 법령, 지방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규정의 조항, 또는 그 일부를 준수하는 것이 재난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및 다른 조건 포함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경우, 법령, 지방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정지, 변경 및 수정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본인 Andrew M. Cuomo 뉴욕주 지사는, 뉴욕주의 헌법 및 법률에 따라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재해가 절박하며 피해지역의 지방정부가 지원이 없이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을 정도로 재해가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뉴욕주 헌법 및 행정법 제 2-B 조 제 28 항에 따라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본인은 2013 년 12 월 31 일부로 뉴욕주 재해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또한** 행정법 제2-B조 제29-a항에 따라 본인에게 부여된 법령, 지방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규정의 특정 조항, 또는 그 일부 등, 뉴욕주 재해 비상사태 기간의 담당 기관을 일시적으로 정지 및 수정할 수 있는 권한에 의거하여 그러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경우, 본인은 2013년 12월 31일 오전 12시 1분부터 2014년 1월 2일 오전 12시 1분까지 코네티컷주의 서약한 경찰, 코네티컷주의 카운티나 지자체의 서약한 경찰, 뉴저지주의 서약한 경찰, 뉴저지주의 카운티나 지자체의 서약한 경찰을 철도 경찰관으로 지명할 목적으로 다음의 법률을 일시 정지 및 수정합니다.

철도법 제88조, 제1항은 집행기관, 운송회사 또는 선박회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철도 경찰관을 뉴욕주 경찰국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 정지를 하며, 주지사가 코네티컷주의 서약한 경찰, 코네티컷주의 모든 카운티나 지자체의 서약한 경찰, 뉴저지주의 서약한 경찰, 뉴저지주의 모든 카운티나 지자체의 서약한 경찰을 철도 경찰관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뉴욕뉴저지항만청 또는 그 하위 기관, Metropolitan Transit Authority 또는 그 하위 기관, New Jersey Transit 또는 그 하위 기관이 소유, 운영 또는 통제하고 있는 모든 철도와 버스 시설 및 재산, 뉴욕주를 왕복하며 승객을 운반할 수 있는 페리를 포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수정됩니다.

철도법 제88조의 제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항은 이 명령을 발효시키기 위해 필요하므로 집행 정지를 합니다.

**또한** 이 명령은 2013 년 12 월 31 일 오전 12 시 1 분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2014 년 1 월 2 일 오전 12 시 1 분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2013 년 12 월 24 일 Albany 시에서 주 옥새 및

본인의 자필로 서명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